

북한 형사법 개관

김재봉(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I. 문제 제기

1. 북한 형사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남북분단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고통과 피해가 증증하는 상황에서 남북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북통합에 대한 열망은 그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의 재결합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염원이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북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든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남북한의 법적 통합에 대한 사전의 준비작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형사법의 통합은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합 형사법 마련이라는 다소 먼 미래의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도 남북교류에 따른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바로 현재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학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 필요성의 관점에서도 요구된다. 북한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형사법이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북한 형사법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북한 형법과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북한 형사법의 원리와 특징

(1) 형사법의 기능적·도구적 성격

북한에서는 형벌에 대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수단적 성격과 노동계급적 성격이 강조된다. 이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된다.¹⁾ 북한 형법에도 죄형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으나²⁾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서술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한에서 형벌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대하고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혁명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제재수단이라고 한다. 즉 반혁명분자에 대한

1) 한국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독일형법 제1조(법률없는 형벌금지).

2) 북한 형법 제6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진압과 일반범죄자에 대한 제재라는 기능실현을 위한 폭력적 강제수단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가 형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형벌은 자본주의국가, 즉 착취자국가의 형벌이 예외 없이 착취제도를 유지하고 착취계급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진압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폭력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³⁾ 범죄와 범죄투쟁은 계급투쟁의 두 측면이면서 일정한 계급투쟁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형법은 사적소유, 사회의 계급에로의 분열, 계급투쟁의 출현 등에 의하여 인간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즉 생산수단과 사적소유가 없었고 사회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공동체의 군집하에서는 인류는 국가와 법, 따라서 형법도 알지 못하였으나 계급사회로서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가 등장하자 소수특권계급이 자기들의 경제적 기초를 철저히 보호하는 수단으로 형법을 만들게 되었으며, 역사의 진전과 함께 지배계급은 소수 부르주아에서 다수의 프로레타리아로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형법은 다수 지배층인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여기서 법과 정치의 밀접성이 나타나고 법은 정치에 종속하게 된다.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과 그 정도를 확정하는 활동은 단순히 형법규범에 예견된 제재규정을 기계적으로 범죄사건에 적용하는 법률기술상의 활동이 아니라 높은 정치사상성을 요구하는 정치활동이 된다.⁵⁾

(2) 주관주의적 성격

북한 형사법에서는 행위자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구성하는 주관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 우선 형벌의 목적으로 예방이 강조된다. 우리 형법상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으로서 응보, 예방·개선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예방과 개선이 강조되고 응보는 부정되거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1950년 제정형법의 경우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형벌은 죄를 범한자로 하여금 새로운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의 일반적 예방을 위하여, 죄를 범한자로 하여금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조건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인간적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복과 징벌을 자체과업으로 삼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응보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제27조). 그리고 1987년 개정형법에서는 범죄자의 처리원칙으로서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노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하며(제3조),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고 새롭게 규정하였고(제4조) 이는 현행 형법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북한 형법에서는 응보적 성격을 갖는 법적 제재 보다

3) 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55-156면.

4) 심현상, 조선형법 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7면 이하.

5) 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68 - 169면.

는 사회적 교양을 범죄자 처리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⁶⁾ 주관주의는 형법이론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북한 형법에서는 범죄의 준비(예비·음모)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이는 준비와 미수가 기수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주관주의 입장을 따르는데서 비롯된다.⁷⁾ 그리고 예비의 중지 또는 중지미수에 대하여는 주관적 위험성의 소멸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인적처벌배제사유로 하고 있다(제17조). 또한 주관주의는 공범체계에서 북한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정범체계 내지 포괄적 공범체계로 연결된다. 주관주의 형법이론은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이며 행위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이나 위험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공범관계에 있어서 가담자의 행위유형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각자의 위험성에 따라 가담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단일정범체계 또는 포괄적 공범체계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⁸⁾

II. 북한 형법 개관

1. 북한 형법 개요

(1) 북한 형법의 연혁

북한 형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20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현행 형법은 2012년 5월 14일자로 수정보충된 것이다.⁹⁾ 1974년, 1987년, 2004년, 2009년의 개정은 전면적인 개정이었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개정이었다. 1974년 1차 개정형법은 전면개정된 것으로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사형 및 전재산 몰수형을 부과하는 등 가혹한 형벌을 새로 규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1987년 2차 개정형법은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로 용어를 수정하고, 이전의 가혹한 형벌을 크게 완화하였다. 2004년 개정형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채택, 유추허

6) 다만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일반범죄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교양개조의 원칙에 따른 취급을 주장하면서 반국가범죄자나 반혁명범죄자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징벌 즉 응보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과탄시키려고 악랄하게 날뛰고 있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징벌로써 철저히 진압하여야 하며 이들을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반범죄자에 대한 징벌은 교양개조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법률의 규정과는 달리 반국가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벌과 일반범죄자에 대한 교양개조라는 이원적 취급이 실무상의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김영철, 북한 형법상 형벌의 변화, 법조 통권 566호(2003.11), 11면 이하, 35면 이하).

7) 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34면.

8) 정성근, 공동정범의 이론, 1976, 30면 참조.

9) 북한은 형법개정 등 법령개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2012년에 발간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법전’에 수록된 형법전에는 1990년 12월 15일 새로 형법을 제정하고 이후 5차례 개정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북한법연구회가 발행한 북한법령집에서는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2012년 개정까지 총 15회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한명섭, 북한 형사법의 현재와 미래,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집, 2015, 378면).

용 조항의 삭제, 노동단련형의 신설 등 형벌종류의 재정비, 노동교화형을 무기과 유기로 분리, 여러 범죄에서 법정형의 완화, 구성요건의 구체화, 경제범죄 신설과 수정 등 사회적인 추세의 반영 등 법치주의와 적정성 원칙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2007년 형법부칙과 2009년 개정형법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 개정형법은 다시 처벌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북한 형법개정에서 대부분은 형법 자체를 수정보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2007년에는 형법부칙의 제정이라는 형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특이하다. 2012년 개정형법은 북한의 법률출판사에서 간행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법전’에 수록되어 발간된 것이 이전의 형법과 다른 점이다.

(3) 북한 형법의 구성

북한의 2012년 개정형법¹⁰⁾은 총 9장 29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규정과 각칙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칙규정은 제1장과 제2장의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형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이며, 제2장은 다시 제1절 범죄, 제2절 형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각칙규정은 제3장부터 제9장까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9장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과 제4장이 국가적 범익에 대한 범죄이고, 제5장부터 제8장까지가 사회적 범익에 대한 범죄이며, 제9장이 개인적 범익에 대한 범죄이다. 형법각칙의 총 231개 조문에서 국가적·사회적 범익에 관한 조문이 206개이고 개인적 범익에 관한 조문이 25개로서 국가적·사회적 범익에 관한 조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칙	각칙
제1장 형법의 기본(제1조-제9조)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범죄(제10조-제26조) 제2절 형벌(제27조-제59조)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60조-제73조)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74조-제90조)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제91조-제182조)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183조-제208조)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09조-제245조)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46조-제265조)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66조-제290조)

2. 북한 형법총칙의 주요 내용

10) 이하 범명의 표시 없이 조문만 있는 경우에는 2012년 개정형법의 조문을 말한다.

(1) 형법 기본이론

북한 형법 제1장은 형법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형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사명을 두고 있다고 하며(제1조), 국가는 공민들의 범죄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범죄미연방지 원칙을 명시하고(제2조), 범죄자 처리에서도 노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하며(제3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에게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하고(제4조), 자수자는 관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한편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고(제6조), 또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하며, 종전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9조)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형벌불소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추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4년 개정형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영역 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화국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다른 나라 사람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와 공화국영역 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제8조).

(2) 범죄론

1) 범죄의 개념, 구성요건

북한 형법은 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라고 규정한다(제10조). 이에 따르면 범죄개념의 핵심요소는 ‘위법성’과 ‘위험성’이 된다. 여기서 위법성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범죄구성요건의 개별적·독립적 징표의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총체이며 범죄구성요건을 전체로서 특징지워주는 것이라고 한다.¹¹⁾ 그리고 위험성이란 위법한 행위가 형벌을 받을 정도의 가벌성 즉 형사가벌성을 지닌 경우를 말한다.¹²⁾ 그리고 그 자체가 사상이나 체제와 관련되어 계급성과 정치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정형성이 결여된 추상적 개념이고 또한 극히 신축성이 있는 개념이다.¹³⁾ 이처럼 범죄의 요소로서 위험성을 명시한 것이 특이한데,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 등 사회주의국가의 형법에서 볼 수 있다.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포섭되도록

11) 심현상, 조선형법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12면 이하.

12) 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83면.

13) 심현상, 조선형법 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101면.

함으로써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적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의 대상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¹⁴⁾

북한 형법에 적시된 범죄의 개념요소는 구성요건요소와 중첩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 형법에는 인과관계, 고의나 과실 등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실범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범죄의 개념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범죄로 파악하기 때문에 과실범도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실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⁵⁾

2) 위법성조각사유

북한 형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요구, 가벼운 가벌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당방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위법성, 현재성, 방위의사,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우리 형법과 다르지 않다. 다만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정당방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이하다. 우리의 경우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남용의 위험 때문에 부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한다는 집단적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그리고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은 초과방위(과잉방위)는 처벌되지만 형벌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제40조). 또한 초과방위에 의해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초과방위살인죄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어 일반살인죄 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제281조).

긴급피난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이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현재의 위난, 피난의사, 보충성,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형법과 동일하다. 피난행위에 의해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는 초과피난(과잉피난)은 처벌되지만 초과방위와 마찬가지로 형벌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우리 형법상 피해자 승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침해된 이익이 인신을 침해한 경우

14) 북한 형법 주석, 2014, 77면 이하.

15) 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03면.

16) 전지연, 북한 형법이론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권, 1999, 148면.

로 한정되고, 가벌성이 작을 경우라는 요건을 명문으로 두고 있는 점에서 특이하다.¹⁷⁾

일반적·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가벼운 가벌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작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가벌적 위법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형법상 일반적·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상응하는 것이라 하고 할 수 있다.

3) 책임

북한 형법에서는 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법률의 착오나 강요된 행위 등 다른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우선 14살 이상의 자에게만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여(제11조) 14살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가 된다. 그리고 정신병자의 책임조각에 대하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형사책임능력을 혼합적 방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한정책임능력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편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책임조각에서 배제하는 원인자유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2조 제2항). 다만 원인자유행위를 술취한 행위에 한정하는 점은 특이하다.

4) 예비·미수

북한 형법에서 범죄의 실현단계에 따라 준비¹⁸⁾, 미수, 기수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다. 다만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우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그리고 그 처벌에 있어 범죄의 준비는 미수보다, 미수는 기수보다 경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즉 준비와 미수를 기수조항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처벌하되, 각각 미수와 기수보다 필요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에서 예비·음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형법각칙에 개별적으로 법정형을 정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미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각칙에 처벌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고 임의적으로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에서는 준비와 미수가 기수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주관주의 입장을 따르는데서 비롯된다.¹⁹⁾ 한편 북한 형법에서는 미수의

17) 독일의 경우 상해죄에서 피해자의 승낙과 윤리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제226조의a).

18) 우리 형법상 예비·음모에 해당한다.

19) 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34면.

형태로서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론과 실무에서 불능미수의 개념을 인정한다. 그리고 예비의 중지 또는 중지미수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인적처벌배제사유로 하고 있다(제17조).

5) 공범

a. 공범에 관한 규정

북한 형법에서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총 3개의 조문이다. 여기서는 총칙상 공범의 범위를 매우 넓게 파악하고 있다.

(a) 단순형태의 공범

북한 형법은 단순형태의 공범으로 추진자(교사범)와 방조범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 그리고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북한 교과서에는 공동정범을 공동의 범죄실행자로 표현하여 일반 공범 내지 단순형태의 공범의 하나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²⁰⁾

(b) 조직체형태의 공범

북한 형법 제21조는 조직체 형태의 공범을 규정하여 총칙상 공범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범죄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된 단체를 목적인 범죄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다.

(c) 공범과 신분

북한 형법 제23조는 '특수한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d) 관여범

북한 형법은 소위 관여범도 공범과 관련하여 형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범은 아니지만 타인의 범죄를 전제로 하거나 타인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범과 유사한 형태로 파악하여 공범규정에 이어서 규정을 두고 있다.²¹⁾ 이러한 관여범에는 은닉범²²⁾, 불신고범²³⁾, 방임범²⁴⁾이 있

20) 범죄 실행자와 정범자란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으나 전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이란 표현보다는 공동 범죄실행자가 자주 쓰인다(김근식, 형법학 1 (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43면 이하).

21) 심현상, 조선형법 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225면.

22)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제24조).

23)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제25조).

24)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

다. 이러한 관여범은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며, 기피자·탈영자 은닉죄(제88조), 일반범죄은닉죄(제227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1조) 및 불신고죄(제72조), 일반범죄불신고죄(제228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제73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65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b. 공범규정의 특징

(a) 공범유형상 특징

북한 형법에서 특수한 공범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직체 형태의 공범이 이에 해당한다.²⁵⁾ 즉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제21조). 북한 형법상으로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북한형법 교과서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²⁶⁾

북한 형법상 공범규정의 또다른 특징으로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과 같은 관여범을 공범과 관련시켜 총칙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b) 공범체계상 특징

북한 형법에서는 공범규정을 단일정범체계 내지 포괄적 공범체계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단일정범체계란 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공한 자를 모두 정범으로 이해하고 각 공동자에 대하여는 그 가공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서 형을 정하며, 공범의 종류를 구별하는 경우에도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함에 그치는 입법체계를 말한다. 포괄적 공범체계는 고의에 의한 공동가담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지만 모두 공범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말한다.²⁷⁾ 북한 형법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형법의 경우 개별적 공범의 유형을 모두 공범으로 포괄하여 포괄적 공범체계라고 할 수 있으나 교사자, 방조자를 실행자(정범)에게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정범체계 또는 단일정범체계라고 하여도 무방하다.²⁸⁾

(c) 공범본질상 특징

북한 형법에서는 공범의 본질에 대하여 고의 공동설을 취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서 공범은 고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제26조).

25) 범죄조직체는 범죄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우리 형사법상으로는 각칙(범죄단체조직죄)이나 특별법(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에서 특정 범죄에 한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형법총칙에서 규정하여 일반범죄로 적용을 확장하고 있다.

26) 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43면, 150면. ; 심현상, 조선형법 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210면.

27) 정성근, 공동정범의 이론, 1976, 25면.

28) 천진호·권오걸, 범죄참가형태와 공범체계론, 법학논고 제8집, 1992, 경북대 법학연구소, 169면.

고의적 범죄 수행에 있어서 그들간의 공동적 의식(주관적 관련)이 필요하며, 공범은 바로 이것 때문에 제고된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다수인의 과실적 행위의 결과 범죄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²⁹⁾

(3) 형벌론

1) 형벌에 관한 규정과 내용

a. 형벌의 종류

북한 형법은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형벌의 종류와 각 형벌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북한 형법 제27에서는 형벌의 종류로서 총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형으로서 사형과 자유형인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³⁰⁾이 있고, 자격형인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형 및 자격정지형 외에 재산형으로서 재산몰수형³¹⁾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고,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북한 형법 제27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형사제재수단인 의료처분과 사회교양처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b. 형벌의 양정

북한 형법의 제39조부터 제47까지는 형벌의 양정 즉 양형에 관한 규정이다. 북한 형법 제39조는 형벌양정 즉 양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양형의 일반적 참작사항과 법정형 범위내에서의 양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벌양정에서 참작해야 할 사항으로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 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에서 형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정형의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형벌양정과 관련하여 형벌양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제40조), 형벌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제41조), 형벌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와 이탈(제42조, 제43조), 병합범(제44조~제47조), 형벌기간계산(제48조,

29) 심현상, 조선형법 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207면 이하.

30)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서 노동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북한형법 제31조 제1항). 현행 북한 형법 각칙 중에서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총165개조에 이른다. 이는 총231개조의 각칙규정의 약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북한 형법상으로는 노동단련형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부과되는 노동교화형과 구별된다.

31)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북한형법 제34조). 재산몰수형은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부과된다. 즉 반국가범죄 중 반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그리고 반민족범죄 중 민족반역죄(제67)를 범한 자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형벌이다.

제4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c. 기타 형벌규정

북한 형법에서는 사회적 교양처분(제50조, 제51조), 집행유예(제52조, 제53조), 사면(제54조), 형기단축 및 석방(제55조), 형집행종료자의 지위(제56조), 형사소추시효(제57조~제59조)가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형법에서 형사소추시효, 즉 공소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형법에 두고 있다. 공소시효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는 것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혼동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³²⁾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하여 소송법적 성격에 중점을 둘 것인지 또는 실체법적 성격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³³⁾ 독일과 중국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 북한 형법에서 형사소추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해당범죄는 3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해당범죄는 5년, 3년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해당범죄 8년, 5년이상 10년 미만의 노동교화형 해당범죄는 12년, 10년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는 15년, 무기로동교화형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년이다(제57조). 한편 북한 형법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제58조).

2) 형벌규정의 특징

북한 형법상 형벌규정의 특징으로 우선 우리형법상 인정되지 않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노동단련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선거권박탈형이 별도의 독립된 형벌로서 인정된다. 또한 우리 형법은 죄수에 관한 규정을 형벌규정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 형법에는 병합죄, 결합범, 건련범 등을 형벌의 양정의 하나로써 취급하여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이하). 그리고 양형사유를 구별하여 형벌양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제40조), 형벌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41조)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안처분이 형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형법과 다르다. 즉 교육·개선처분인 사회적 교양처분(제50조 이하)과 정신병자나 정신이상자에 대한 의료처분(제12조 이하)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면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은 형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54조).

32) 이백규, 1999년 북한형법 개정의 의미와 평가, 인권과 정의 통권 제321호, 2003, 33면.

33) 독일형법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78조(시효기간), 78조b(시효의 정지), 78조c(시효의 중단)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형법의 경우 제8절 시효라는 표제하에 제87조(시효기간), 제88조(시효의 배제), 제89조(시효기간의 기산)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 형법상 형벌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의 형벌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다수 있다. 우선 형벌의 종류로서 금고형이 인정되지 않는다³⁴⁾. 범죄수단 등 범죄관련 물건에 대한 몰수나 추징도 형벌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³⁵⁾ 북한 형법상 집행유예는 인정되지만 선고유예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형법에는 형벌의 집행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제66조 이하), 북한의 경우 형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제419조 이하). 이 밖에 우리 형법에는 누범가중과 형의 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 형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3. 북한 형법각칙의 주요내용

(1) 북한 형법각칙의 편제 및 구성

형법각칙은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부터 제9장(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까지 총 7장 2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과 4장(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제5장(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6장(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7장(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8장(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9장(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국가적 법익 및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의 조문수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국가 및 사회를 중시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2)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북한 형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60조부터 제73조까지 전체 3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반국가범죄, 제2절은 반민족범죄, 제3절은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이다. 이들 범죄는 대체로 ‘반국가 목적’이나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 등의 문언을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여, 모든 범죄에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장기의 노동교화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형법에서 재산몰수형은 일반범죄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중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의 5개 범죄의 경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사형판

34) 그 이유는 금고형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고안해 낸 형벌로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와 자유·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인사들을 탄압, 학살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김근식, 형법학 1(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64면).

35) 형사소송법에 증거물 몰수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다(제103조, 제105조).

결 선고에 부가하여 재산몰수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반국가·반민족범죄에 대하여는 부가적 형벌인 선거권박탈형(제32조)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는 북한 형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2절 화폐위조·탈세·밀수·밀매·고리대금 등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전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4절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4개 절로 구성되고, 제91조부터 제182조까지 총 91개 조문이 포함되며 북한 형법의 장별 범죄 중 가장 많은 조문을 갖고 있다. 북한 형법이 2004년 형법개정 전에는 북한체제의 옹호에 중점을 두는 정치형법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 전면적 형법개정을 통하여 경제형법으로 성격이 크게 바뀌면서 형법 조문 중 경제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들이 북한 형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자율권확대, 가격체계의 현실화, 대외교역과 내부의 시장경제 촉진 등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일탈행위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경제와 관련한 다수의 조문들이 신설 또는 개정되고 있다.³⁶⁾ 이러한 형법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³⁷⁾

(4)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는 북한 형법 제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적 문화의 침투를 막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에 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조문들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개정되고 있는바, 이것은 대외개방 등에 따른 사회의 이완분위기에 대처하고 주민생활의 통제와 단속을 통해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퇴폐행위(제183조, 제184조), 역사유적·유물 파손·도굴·밀매(제186조~제189조), 저작·발명·창의고안 침해(제190조, 191조), 컴퓨터망침입·정보파손(제192조~제194조), 의료사고, 불량약품생산, 장기매매, 마약밀수 등의 보건의료질서침해(제198조~제208조) 등을 처벌하고 있다.

(5)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북한 형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고,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집단적 소동죄

36) 이백규, 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 동아법학 제66호, 2015, 172면 이하.

37) 2012년 개정형법에서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제104조(대부질서위반죄), 제105조(화폐교환질서위반죄), 제111조(암거래죄) 등이 신설되고, 제129조(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 제132조(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등이 삭제된 바,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유입과 계획경제의 완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제209조), 직무집행방해죄(제210조),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제213조), 폭발물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제215조), 비밀누설죄(제219조, 제210조), 령공·령해침입죄(제223조), 증인협박죄(제225조), 일반범죄은닉죄(제227조), 일반범죄불신고죄(제228조), 도주죄(제229조), 뇌물죄(제230조), 봉인손상죄(제231조), 부당한 신고죄(제233조) 등이 포함된다. 제2절은 직무상 범죄로서, 직권남용죄(제235조), 월권행위죄(제236조), 직무태만죄(제237조), 신소·청원처리질서위반죄(제239조), 국가기관권위훼손죄(제240조), 비법체포·구속·수색죄(제241조), 사건과장·날조죄(제242조), 비법석방죄(제243조), 부당한 판결·판정죄(제244조),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제245조) 등이 포함된다.

(5)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북한 형법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살도록 교양하고 통제할 목적 밑에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 및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다. 불량자적 행위죄(제246조), 패싸움죄(제247조), 음탕한 행위죄(제250조), 직권참용죄(제251조), 거짓행세죄(제252조), 도박죄(제255조), 미신행위죄(제256조),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제257조), 늙은이·어린이 보호책임회피죄(제258조), 학대팔시죄(제260조), 습득물횡령죄(제261조),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제262조) 약취물건거래죄(제263조), 묘파괴죄(제264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65조) 등이 포함된다.

(5) 국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국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는 북한 형법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개인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로서 살인, 상해, 폭행, 감금, 유괴, 강간, 모욕·명예훼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로서 절도, 공갈, 사기, 횡령, 강도, 손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의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국가 및 사회협동 단체의 재산과 함께 근로자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파악하고 있으며,³⁸⁾ 그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III. 북한 형사소송법 개관

1. 북한 형사소송법 개요

(1)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

38)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628면-629면.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재산적 범익에 대한 범죄가 많지는 않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1950. 3. 3. 제정되었다. 이는 구소련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아 예심제도를 채택하고,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배제하였으며, 사인소추를 인정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후 1976년, 1992년, 2004년에 전면개정이 있었고, 2005년, 2006년, 2011년, 2012년에는 일부의 수정보충이 이루어졌다.³⁹⁾ 이 중 1992년 개정과 2004년 개정이 인권보장 및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개정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인권보장규정의 신설(제4조), 진술강요의 금지(제93조), 자백의 보강법칙(제94조)을 규정하였고, 2004년 개정에서는 피심자 및 피소자의 구금기간 단축, 기소 및 재판에 위한 구류기간 명시, 제포영장제도의 도입, 강압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 외에 유도에 의한 진술금지를 규정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12년 5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된 것으로 총 9장 438조로 구성된다.

(2) 북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수사 및 예심절차, 기소절차, 재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된다. 북한 형사소송절차에서 특이한 것은 수사과 기소 사이에 예심절차를 둔 것이다. 예심절차는 예심기관이 피심자를 심문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에 해당한다. 결국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라는 용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수사, 예심, 공소제기절차

(1) 수사와 예심에 대한 기본이해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⁴⁰⁾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광의)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수집·보존하는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⁴¹⁾ 반면 북한의 경우 수사는 범죄자의 적발활동으로 제한하고(제133조), 범인의 발견·확보나 증거의 수집·보존은 원칙적으로 예심절차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예심제도는 본래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법원으로부터

39)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법령개정의 비공개원칙에 따라 개정현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2012년에 발간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법전’에 수록된 형사소송법전에는 1992년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 형사소송법이 채택되고 3차례 수정보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북한법연구회가 발행한 북한법령집에서는 1992년 형사소송법을 새로 제정한 이래 2006년까지 7회나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북한 2012년 법전을 통해 밝혀진 2011년과 2012년 개정을 포함하면 모두 9차례나 개정이 된 것이다(한명섭, 북한 형사법의 현재와 미래,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대회발표집, 2015, 384면).

40) 이하 범명의 표시 없이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조문을 말한다.

4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35면 ;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 2015, §16-1.

터 독립한 신분을 가진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체포·구금, 압수·수색 등 수사활동을 한 후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심제도는 처음에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구소련의 예심제도를 받아 들여 검찰소가 일반 범죄에 대한 예심을 담당하였으나, 1970년대 이르러 사회안전기관에도 예심부서를 두어 검찰소와 함께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북한의 수사·예심제도는 러시아나 중국과 기본 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외근업무 중심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예심원은 내근업무 중심으로 경찰부문의 초동수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적 검토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사와 예심을 구분하고 수사를 예심의 전단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색과 압수 등 강제처분은 예심절차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수사

1) 수사의 의의, 임무, 주체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절차를 말하며(제134조), 범죄의 단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자를 적발하고 그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기까지의 과정이다. 이처럼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만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는 제기된 형사사건의 범죄자를 찾아내며 사건해결의 기초가 될 증거로서 그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을 제때 수집·보전하는데 한정된다.⁴³⁾

북한에서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 권한을 가진 일군도 수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여기의 수사일군에는 인민보안·안전보위기관 수사부서(감찰부서·인민보안소 포함)의 수사원, 검찰기관 수사부서의 검사, 수사부서가 따로 없는 검찰소·특별검찰소의 검사,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군부대 안의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군 그리고 단위책임자의 위임에 따라 전문수사원이 아닌 일군이 포함된다.⁴⁴⁾

2) 수사의 절차, 방법

수사는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시작된다(제82조 제1항).⁴⁵⁾ 수사원은 범죄를 신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42) 손영조, 북한 예심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81면 이하.

43)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법원행정처, 1996, 331-332면.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2004, 11면.

45)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원의 수사시작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검사의 결정, 예심에 넘기는 검사의 결정, 검사에게 넘기는 재판소의 판정이 있을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이 시작된다(북한 형소법 제82조).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제136조),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감정,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고 감정을 맡길 수 있다(제137조). 일단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원칙적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없으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제140조). 수사원은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현행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⁴⁶⁾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제143조).

수사원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을 예심에 넘겨야 한다. 이 때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는 체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5조). 수사원의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담당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제146조 제2항).

(3) 예심

1) 예심의 의의·임무, 주체·관할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은 수사일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강제처분 등 수사활동을 통하여 피심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⁴⁷⁾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의 임무로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7조).

이러한 예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민보안성 외에도 검찰기관과 군검찰기관 이 있으며, 북한의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하여는 인민보안성 내 독립부서로 철도보안국을 두고 따로 예심을 하도록 하고 있다.⁴⁸⁾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하고(제48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제49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46) ①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②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③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④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⑤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 수사원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북한 형소법 제142조).

4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127면.

48) 손영조,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5권 제3호, 2012, 65면.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들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 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또한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 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예심은 군사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제49조).⁴⁹⁾

2) 예심의 절차와 방법

a. 예심의 시작과 종결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제156조). 예심원은 예심과정에서 피심자심문, 증인심문, 체포·구속, 검증, 감정, 수색·압수, 재산담보 처분 등 임의처분과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뒤에서 개별적으로 상술한다). 예심절차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담당한다. 즉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 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58조).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한다(제253조).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제254조 제1항).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하며(북한 형소법 제255조)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제356조).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예심과정에서 예심원은 형사사건을 분리(제94조), 병합(제90조)할 수 있고, 피심자의 질병이나 도주로 형사사건 취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중지할 수 있다(제97조 2호). 이밖에 형사미성년자, 형사소추시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제108조).

b. 피심자심문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북한 형소법 제157조).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심문하려면 그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피심자를 구인할 수 있

49) 이밖에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수부문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 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사업을 침해한 일반보안기관의 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다(제163조).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체포를 의뢰할 수 있다(제165조). 피심자신문 절차에서는 강제질문 금지(북한형소법 제166조), 주간(8시-20시)신문원칙과 예외적 야간신문(제162조), 피심자 권리고지(제168조, 제169조), 심문의 개별화(제167조), 기록수와 입회인 참가(형소법 제171조), 통역인과 해석인 참가(제172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신문을 끝내면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쓰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하며(제174조 제1항),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조서에 밝힌 다(제174조 제2항).

c. 체포·구속

예심원은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체포와 구속을 할 수 있다. 체포, 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제177조 1항, 178조 1항).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와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제177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수사원과 예심원은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제179조). 다만 수사원은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21). 예심원이 피심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0조 제 1항, 제181조). 검사의 승인은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80조 제2항)22). 예심원이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속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제181조).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어야하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그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2조).

d. 수색·압수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수색과 압수를 할 수 있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 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 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다(제215조).

수색과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하며, 이때 예심원은 수색과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제216조).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

결정서를 수색 압수 당하는 자에게 제시하며,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제217조, 218조). 수색과 압수는 낮에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할 수 있다(제219조). 북한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 절차에 따른다(제221조).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하고, 이 때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 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제222조).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제223조).

e. 재산담보처분

예심원은 북한형사소송법상 특수한 대물적 강제처분인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재산담보처분이란 재산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 앞으로 결정될 재산몰수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인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용된 재산에 대한 모든 처분을 금지하고 그대로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제243조). 재산담보처분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하는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지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⁵⁰⁾ 예심원이 재산담보처분을 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산목록을 만들어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제249조).

f. 증인심문, 대질심문, 식별심문

예심원은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이 있는 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제224조).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제227조). 이 때 해당 장소로 소환하여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보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이러한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제 228조).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제234조).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하며,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제239조). 대질심문과 식별심

50) 재산담보처분의 대상자가 노동자 또는 사무원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한 달분 식량과 생활비를 재산담보처분해서는 안 되며, 농장원인 경우에는 다음 분배일까지의 식량과 생활비, 소농기구와 가축을 재산담보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축이 가족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을 경우에는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담보처분은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또는 몰수할 재산량만큼 한다(제246조).

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 한다(제242조).

g. 검증, 심리실험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제191조). 검증의 종류에는 현장검증, 증거물 검증,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산 사람에 대한 검증(검진)의 4종류가 있다(제192조). 검증과 검진은 원칙적으로 낮에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할 수 있다(제196조). 검증과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약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제200조).

북한 형사소송법은 특수한 검증의 방법인 심리실험을 규정하고 있다. 심리실험은 실험의 방법으로 하는 검증의 일종이며,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 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다(제201조).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제204조).

(4) 공소제기 등 검사의 종결처분

검사는 예심원이 제출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면 10일 안으로⁵¹⁾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 이 때 검사는 기소장과 함께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제261, 제264조). 검사의 기소에 있어서는 기소독점주의(제12조)와 기소편의주의⁵²⁾가 인정된다. 북한도 우리의 공소시효제도에 해당하는 형사소추시효제도를 인정하는데, 형사소송법이 아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57조). 공소시효기간은 대체로 우리보다 다소 길고,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형법 제58조).

이밖에 검사는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예심원에게 환송하고(제267조), 기소중지나 사건기각, 의료처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97조, 제108조).

3. 재판절차와 형집행절차

51) 특별히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고,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 안으로 검토처리한다(형소법 제261조). 검사가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형소법 제262조).

52) 북한 형소법은 검사는 “사회적 교양처분의 사유(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경우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형소법 제115조, 제116조)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1) 북한 형사재판의 기본원칙

북한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는 i)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공개주의, ii) 재판소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방어를 근거로 심리·재판하는 구두변론주의, iii) 재판소가 공판기일에 직접적으로 심리·조사한 증거만을 실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직접주의, iv) 심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연속심리주의 등이 인정되며,⁵³⁾ 이 점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재판절차는 직권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즉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기능을 서로 달리하여 각각 소추의 기능과 변호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판단과 해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판소와 힘을 합침으로써 재판에서 당의 사법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그들 서로가 재판소 앞에서 시비를 가르고 다툼질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⁵⁴⁾ 당사자주의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직권주의를 강조한다.⁵⁵⁾

(2) 제1심 재판절차

1) 재판준비절차

판사는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 예심, 기소절차에서 법령,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검토하는 재판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재판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제288조, 제289조, 제291조). 재판준비절차에서 판사는 사건을 중지 하는 판정, 분리기각하는 판정, 사건 전부를 기각하는 판정, 사회적 교양처분 판정,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내는 반송판정, 관할 재판소로 이송하는 사건이송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제295조, 제296조).

2) 재판심리절차

재판심리는 검사, 피소자, 변호인의 참가 하에서 진행된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가 해당 변호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공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63조). 다만,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제61조). 재판심리절차는 모두절차로부터 시작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피소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재판에서의 그의 권리를 알려준다. 또 재판소성원과 검사 등을 바꿀 데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이어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고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제305조).⁵⁶⁾ 이어 피소자심문과 증인심문 등 사실심리절차가 진행된다. 피소자에

53)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II, 1993, 693-697면.

5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193면.

55) 재판소는 기소사실을 직접 변경하거나 기소의 추가를 위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점에서 직권주의 경향이 잘 나타난다(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354-355면).

대한 심문은 기소사실에 대한 피소자의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제 307조). 재판장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제324조). 재판절차에서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은 25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다만,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사건의 구류기간은 10일까지이다. 제281조),⁵⁹⁾ 재판정에서 피소자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82조).

3) 판결과 판정

재판소는 재판심리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제338조).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가하여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제339조, 제341조). 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에는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이 있고,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과 사회적 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다.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과 집행유예판결이 있다(제342조-제344조). 이밖에 재판소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 사건심리를 중지하는 판정, 의료처분에 관한 판정, 부대판정 등을 할 수 있다.⁵⁷⁾

(3) 상소 등 불복절차

1) 상소심 절차

북한에서도 판결에 대한 불복제도로 상소가 인정된다. 다만 3급⁵⁸⁾ 2심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소는 제1심 재판에 대하여 단 한 차례 인정되고, 최고재판소가 제1심으로 재판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종결되게 된다. 특히 최고재판소는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할 수 있으므로(형소법 제53조) 상소의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될 수 있다. 상소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된다. 즉, 피소자의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 재판소는 처음에 판결을 내린 재판소가 정하였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80조).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소할 수 있고,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제356조). 상소 및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할 수 있다(제359조). 제2심 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며, 기록심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검사와 변호인은 참가할 수 있으

56) 북한 형소법에서는 피소자가 자백하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간이공판절차나 영미법상의 기소인부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5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222면.

58) 북한의 재판소는 크게 통상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나뉜다. 통상재판소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단계로 조직되어 있고, 특별재판소에는 군사 재판소, 군수 재판소, 철도재판소가 있다(북한헌법 제159조, 재판소구성법 제3조).

나 피소자를 참가시킬 필요는 없다(제366조). 제2심 재판에서는 제1심 판결·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제374조), 제1심 판결·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 또는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반송판정(제375조), 관할 재판소에 보내는 이송판정(제376조),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제377조), 제1심 판결을 직접 고치는 판정(제378조) 등을 할 수 있다.

2) 비상상소와 재심

a. 북한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비상상고에 해당하는 비상상소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비상상소는 법령위반을 시정하여 개개의 소송절차에서 사회주의적 정의 및 합법성을 실현하고 사법의 통일성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⁵⁹⁾ 비상상소는 최고검찰소 소장과 최고재판소 소장이 제기할 수 있고, 이들은 비상상소 제기서를 최고재판소에 보내는 방법으로 비상상소를 제기한다(제395조). 최고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고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해결하고, 최고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고사건은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판사회에서 심리해결한다(제384조, 제386조).

b.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판결의 잘못을 시정하는 재심제도가 인정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인 무죄판결, 사건기각판정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재심사유는 i) 판결·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ii) 판결·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이다(제408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하며, 재심의 제기는 최고검찰소 소장만이 할 수 있다(제406조, 제409조). 재심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제403조).

(4) 판결·판정의 집행

북한에서 판결·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판정을 한 재판소의 재판장이 집행을 지휘하고 검사가 이를 감시한다(제419조 제420조). 이는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과 구별된다.

IV. 북한 형사법에 대한 평가

1.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

(1) 북한 형법개정의 동향

북한 형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20차례 개정되어 비교적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빈번한 개정은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이유가 있고, 또한

59) 이 점은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면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고제도와 구별된다(한국 형소법 제446조, 제447조).

과잉처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입법방식에서 형법과 행정법령을 연동시키는 것도 잦은 개정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⁶⁰⁾ 북한 형법 개정의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처벌이 완화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1974년 개정 형법, 2007년 형법부칙, 2009년 개정형법에서는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4년 개정형법과 현행 형법인 2012년 개정형법은 다시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에 규정되어 기본형벌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단련형의 상한이 2년 이하에서 1년이하로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처벌이 완화되었다.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범죄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법정형이 하향조정된 경우가 많다. 그밖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나 공모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많은 조문에서 삭제되었다.⁶¹⁾

이러한 형사법 변화의 동향과 관련하여 2007년 형법부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사시설고의손괴죄 등 형법각칙상 일부 범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사형 또는 재산몰수형을 부과하도록 가중처벌하거나 외화도피죄 등 종래 형법에 없던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주의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며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2004년 이후 북한 형법에서 처벌의 완화경향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일부 중대한 질서침해행위에 한하여 엄벌주의를 취한 것으로 처벌완화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 형법체계의 특징

북한 형법체계의 특징으로 기본법인 형법에 형사처벌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형법이 지나치게 많은 우리와 구별되는 점이다. 북한 형법에는 고리대죄(제113조), 특허권침해죄(제117조), 전력공급질서위반죄(제156조), 역사유적파손죄(제186조), 의료사고죄(제198조), 출판질서위반죄(제214조) 등 우리의 경우 행정형법이나 특별형법에 의해 규율되는 범죄들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별형법 양산에 의한 규범력 약화와 과잉형벌 등에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본법인 형법을 중심으로 범죄와 형벌이 규율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의 평가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인권보장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

60) 북한의 행정법령 등 개별법령을 보면, 대부분 맨 마지막에 “이 법을 어겨 00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적 책임에 대하여는 행정처벌법을 적용하고 형사적 책임에 대하여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한다. 따라서 정책변화로 처벌의 대상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처벌의 정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61)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제23호, 2015, 105면 이하.

원칙이며, 문명국가 형법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아래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비추어 북한 형법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법률주의

북한 형법 제6조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빈번한 형법개정도 변화되는 사회현실을 법률로 규율하려는 노력이며 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률 외의 형식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주의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인민보안성 등 행정기관의 포고에 의한 처벌이다.⁶²⁾

2)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요소를 이룬다. 북한 형법에서도 명확성 원칙에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개방적 구성요건을 한정적 열거의 형태로 개정하거나⁶³⁾ 추상적 표현을 구체적 열거의 형태로 바꾸는⁶⁴⁾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형법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범죄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이나 춤을 보았거나 들은 자’(제184조), ‘파렴치한 불량자행위를 한 자’(제246조), ‘음탕한 행위를 한 자’(제250조) 등의 경우 매우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양

62) 1997년 8월 5일 북한 사회안전부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 포고령에는 낱알을 포전과 무지, 탈곡장, 창고에서 훔친 자 중 특히 엄중한 자는 총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6년 3월 1일자로 북한은 인민보안성 명의로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하여」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마약유통자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2006년 11월 15일에는 인민보안성 명의로 「전력생산에 피해를 주거나 전력을 낭비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하여」라는 포고문을 내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빼돌리는 현상과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현상, 불법적으로 전기를 연결해 끌어 쓰는 현상 등에 해서는 벌금 또는 노동교화형 등의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경고하였다. 2009년 12월 28일에는 인민보안성 명의로 아래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외화를 유통시키는 등 포고문에서 금지한 사항을 어긴 어진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경활동과 업을 중지시키거나 해산하고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하며 외화로 물건을 팔고 사는자, 외화암거래, 고리, 거간, 뇌물행위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외화를 류통하거나 락취한자, 그러한 행위를 조직하거나 묵인조장시킨 자에 대해서는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 하고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명섭, 북한 형사법의 현재와 미래,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집, 2015, 392면).

63) 예컨대 1999년 형법 제104조에는 “폭행, 협박,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라고 직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형법 제220조에는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라고 개정하였다.

64) 1999년 형법 제45조에서 “테로한 자 …”란 표현을 2004년 형법 제60조에서 “살인, 랏치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 행위를 한 자…”로 개정하였다.

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⁶⁵⁾는 그 경계와 각각의 해당사유를 예측하기가 곤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북한 형법에서는 벌금형의 상한이 없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상한과 하한의 제한 없이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재량으로 정하는데(북한 형법 제33조 제2항), 남용될 여지가 많다.⁶⁶⁾

한편 북한 형법과 행정법령의 연동에 따른 처벌의 불명확성도 문제된다. 북한 행정법령에서는 개별 조문의 말미에 해당 행정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상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는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될 제재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⁶⁷⁾

3) 적정성 원칙

북한 형법 제7조는 “국가는 범죄행위와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적정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적정성 원칙의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소추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부과하는 재산몰수형의 경우 범죄자 개인에게도 과도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일종의 연좌제 처벌로서 형사책임의 개별화에 반하는 것이다.⁶⁸⁾ 한편 과실범이나 예비에 대한 처벌을 각칙이 아닌 총칙에서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도 과잉처벌이라 할 수 있다.

2.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

(1)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형사소송법은 1950년 제정된 이래 7차례(또는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정교화되고 체계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

65) 이 문언은 2007년 형법부칙에서 사용하고 있다.

66)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제23호, 2015, 4면.

67) 예컨대 여성을 희롱하는 불량자행위를 한 경우 인민보안단속법 제23조18)를 적용하면 위 법 제57조에 의해 단순 교양처리도 가능하고, 행정처벌법 제191조를 적용하면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화처벌, 정상이 무거우면 3개월 이상의 노동교화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면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각 처하며,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더 나아가 형법부칙 제17조에 따르면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한명섭, 북한 형사법의 현재와 미래, 북한 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집, 2015, 394면).

68) 강석호, 북한형법체계와 죄형법정주의,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159면 이하.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종전 형사소송법에 분명하지 않던 체포·구속절차, 재판준비 절차, 사건의 분리와 병합, 사건의 중지와 기각,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심리실험 등의 구체적인 방법, 사회적 교양처분과 손해보상, 판결·판정의 집행절차 등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형사소송법의 전체적인 편제도 공통되는 사항들을 제2장 일반규정 안에 모두 11개 절로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각 규정마다 조문의 제목을 붙임으로써 그 의미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개정되고 2012년에 추가 개정된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심자·피소자의 구금기간을 명시하고, 체포장 제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강압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유도에 의한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예심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법에 의한 사법권 통제를 도모하고, 야간심문의 금지(제162조)나 반복조사의 금지(제 149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5조), 피심자에 대한 권리통고(제168조), 피소자의 좌석을 검사의 맞은 편 변호인의 옆으로 변경한 것(제279조), 재판정에서의 구속금지(제282 조) 등도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것이다.⁶⁹⁾

(2) 북한 형사소송법체계의 특징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판절차에 인민의 참여기회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선 제1심 형사재판의 재판부에 인민참심원 2인이 참여하여 판사 1인과 같이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9조, 제14조). 이러한 인민참심원제도는 구소련이 독일의 참심원제도를 받아 들인 것을 계수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대조된다. 인민참심원제도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일반인에 대한 정치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⁷⁰⁾ 그러나 배심제 등과 같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재판결과를 도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또다른 제도로 현지공개재판이 있다. 이는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것이다.⁷¹⁾ 북한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통해 인민들이 범죄와의 투쟁에서 주인으로 각성되고 범죄와 범죄자를 밝히고 확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기초하여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근로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한다.⁷²⁾

69)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제23호, 2015, 123면 이하.

70)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제23호, 2015, 79면 이하.

71)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 규탄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86조).

7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176면.

(2) 적정절차의 관점에서의 평가

형사소송법의 이념으로 실제적 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주의가 있으며, 이 중 형사소송법의 인권보장적 기능에 가장 밀접한 것이 적정절차이다. 아래에서는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을 평가하기로 한다.

1) 강제처분절차

북한의 수사 및 예심절차에서는 체포·구속, 수색·압수 등 강제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강제처분은 검사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고 재판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영장주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석,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변호인의 조력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변호인의 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재판기관의 형사재판사업을 방조하고 협력하며 당의 사법정책을 옹호관철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변호사는 피소자가 범한 죄의 엄중성과 함께 그가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을 깊이 분석론증함으로써 피소자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앞에 진 죄과의 엄중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⁷³⁾, 변호인을 통해 피소자는 충분히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피심자·피소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예심원의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므로(제62조), 수사 및 예심의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3) 재판과 상소절차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271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판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다. 즉 상급재판소는 하급재판소의 업무를 감독통제하고(헌법 제167조, 재판소구성법 제18조, 제20조), 재판사업에 관하여 대응하는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재판소구성법 제19조), 검사가 재판업무의 수행을 감시하고(형소법 제14조, 제287조), 상급재판소가 일방적으로 하급재판소의 관할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재판소로 보낼 수 있으며(형소법 제51조, 제53조), 최고재판소 소장이나 최고검찰소 소장이 제1심 재판소의 무죄판결 등에 의한 피소자의 석방을 일방적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소법 제347조).

공개재판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인데,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심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제270조 제1항) 공개재판원칙을 1심 재판으로 제

73)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김일성종합대학, 1987, 76면.

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우 폭넓게 재판공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70조 제2항).

한편 북한에서는 상소권이 크게 제한된다. 즉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최고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3조), 최고재판소가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과 판정은 상소나 항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58조).

V. 결론

위에서 북한 형사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북한 형사법의 변화 동향과 그에 대한 비판 등 평가를 하였다. 북한 형법의 경우 대체로 처벌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형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보편기준에 충실한 정상국가의 기준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형사실체법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법의 핵심원리인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형사법은 과거에 비해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강화한 규정들이 보완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개선된 형사법 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형사법 규정과 무관하게 동지심판회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⁷⁴⁾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자의적 불법적 체포 및 구금이 이루어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다.⁷⁵⁾ 따라서 북한 형사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규정뿐만 아니라 법현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과정에서 법적 혼란을 피하고 형사법의 통합을 무리 없이 완수한다는 미래의 과제를 위해서, 또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현재의 과제를 위해서도 북한의 형사법과 법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북한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북한체제와 법의 고유한 특성을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단일한 잣대로 우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74) 김태석, 북한의 유사형사법제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6호, 2006, 451면 이하.

75) 박종선,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평화학 연구 제17권 제3호, 2016, 87면 이하.